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다5590(본소), 2015다5606(반소) 판결 [보증채무금 · 손해배상(기)]

재판경과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다5590(본소), 2015다5606(반소)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2. 31 선고 2013나5389(본소), 2013나5396(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5934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주식회사 우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안상엠앤씨 주식회사

판결 선고 2017. 9. 7.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2. 31. 선고 2013나5389(본소), 2013나5396 (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착공시기에 관한 약정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즉시 착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2012. 11.까지 받아야 할 피고의 의무까지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2012. 12. 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문서(갑 제14호증)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거나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신의칙상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